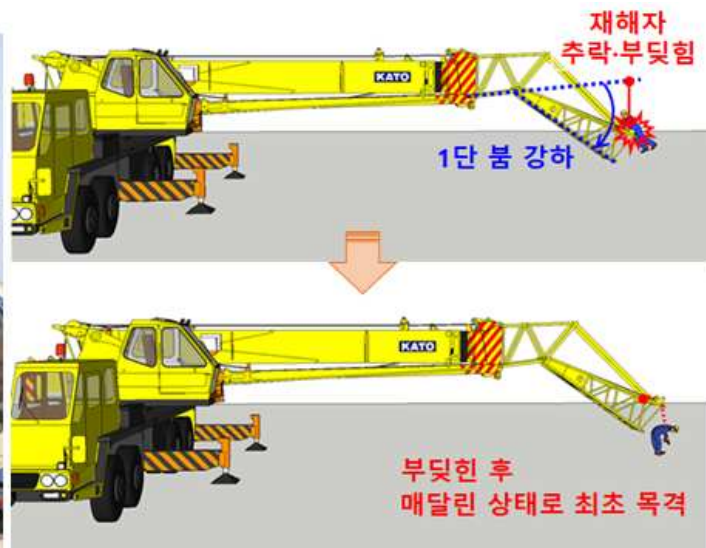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2. 10. 20.(목) 07:35경, 경기 □□시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운전원인 피해자가 이동식 크레인 지브(jib) 위에 올라서서 지브(jib) 연장 작업을 하던 중 지브(jib)가 강하 하였고, 강하하는 지브와 함께 재해자가 추락하여 지브(jib)에 복부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조치사항 미준수**
 - 차량계 건설기계(275톤 이동식 크레인)의 부속장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①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하여야 하며, ②안전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·설치하여야 하나 미 실시
- 추락 방지 조치 미 실시**
 -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또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**
 -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속장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①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②지브가 강하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
- 추락 방지 조치 실시**
 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